##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528

발의연월일: 2024. 8. 2.

발 의 자:이병진・임미애・윤준병

서삼석 · 소병훈 · 안태준

강경숙 • 이기헌 • 서미화

이워택 · 김영배 의원

(1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 이외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시행령으로 허용되 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 농용자재 판매를 허용 행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농업이 활성화된 지역일수록 활용 가능한 토지 대부분이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읍내처럼 번화한 곳이나 해당 지역 외곽에 판매장을 설치해야 하는 실정임. 하지만 이는 농기계 수리센터 등에 방문하여 한번에 농용자재를 구매하고자 하는 농민의 현실적인여건과 맞지 않음.

이에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용자재 판매시설의 설치'를 추가하여 농업진흥구 역 내 농기계 수리센터 등에 방문한 농민들이 농용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10호 신설).

법률 제 호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용자재 판매시설의 설치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
한) ①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	한) ①
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	
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용
	<u>자재 판매시설의 설치</u>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